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6차)

1.일 시	2017년 11월 15(수) PM17시30분	2.장 소	9동1층 전략기획단 회의실		
3.참석자	나윤섭, 이민표, 김윤호, 이현진, 김용태, 이동수, 손영재, 윤상희, 김상진			4.불참자	없음
5.안 건	1)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				

6.회의 내용

위원장 :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법 제29조, 제31조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며 개회를 선언하다.

(제 1의안)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

위원장 : 위원장은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에 관하여 주무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.

주무자 :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에 대해 설명함.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의 제 1항에 근거하여 대상기관 및 승인대상을 설명함.
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내역을 설명함. 2016년 법정부담금은 7억3천만원이었으며, 퇴직수당의 40%인 1억2천9백만원이 더해져 8억5천9백만원이 발생하였고, 법인부담금에서 부족한 4억9백만원을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여 시행함을 설명함. 2017년 법정부담금을 설명하며, 임금상승률, 장기근속자 퇴직자 증가 등의 원인으로 법정부담금 8천2백만원, 퇴직수당 1억3천1백만원 총 2억1천3백만원이 증가할 것을 설명함. 이와 관련하여 실제부담금 항목을 설명하며, 교육부에 승인요청 할 것을 설명함

간서명 - 위원장 : 나윤섭 위원 : 김상진 위원 : 윤상희

위 원 : 이민표 위원은 만약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될 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함

주무자 :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함

위원장 : 위원장은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에 대하여 다른 위원에게 의의가 없는지 질의함

위원장 : 이로써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이 심의에 통과하였음을 결정짓고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나윤섭 위원장, 학생 측 윤상희 위원, 외부인사 김상진 위원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하다.

위 원 : 위원 모두 동의함.

위원장 :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.

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· 날인함

2017년 11월 16일

위원장 : 나윤섭	부위원장: 이민표	위 원 : 김윤호
위 원 : 김용태	위 원 : 이동수	위 원 : 김상진
위 원 : 이현진	위 원 : 손영재	위 원 : 윤상희